

— 구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9. 1. 22 설치한
- 구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기 위해 구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(제0321호, 1998.11.13)를 폐지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구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

4. 참고사항

-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폐지령
(대통령령 제18003호, 2003. 6. 23)
-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폐지령
(국무총리훈령 제441호, 2003. 6. 23)

5. 검토의견

- 2003. 6. 23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등 상위법령이 폐지되어 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기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써 법령이나 타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